

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(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)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표: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질환 예방

□ 신청방법

○ 접수기간 : ' 23. 2. 17.(금) 09:00부터 ~ 재원소진시까지

○ 접수방법: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(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)

【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】

☞ 공단 홈페이지(kosha.or.kr) → 사업소개 → 재정지원 → 건강일터 조성지원 → 공지사항

※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상황에 따라 신청수 접수 중단 및 공모방식(일괄접수 후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대상자 선정)으로 전환되어 진행될 수 있음

○ 지원품목 :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개선 설비

2 지원내용

□ 지원금액

○ 한도액: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 한도(단, 조리흙은 최대 2천5백만원)

○ 지원비율

신청대상	지원비율
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* 규모 이하 사업장	공단 판단금액의 70%
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	공단 판단금액의 50%

*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[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]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○ 지원대상

- 관리대상유해물질·허가대상유해물질,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금속가공유 포함), 분진작업,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
-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흙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

-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

※ 신규설치 또는 전부 교체설치에 한하여 지원 가능(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 불가)

○ 지원조건

- 후드, 덕트, 공기정화장치,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- 환기장치 기준 충족, 작업환경측정, 제조업 유해·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등
- 조리흙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는 「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(KOSHA GUIDE W-26-2022」에 준하여 설치
- ※ 조리흙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
-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(작업환경 측정 대상일 경우)

○ (문의) 1644-8845

지사	연락처	주소	관할지역
서울광역본부	02-6711-2826	(04512)서울시 중구 칠패로 42, 7층 산업보건센터	서울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
서울남부지사	02-6924-8734	(07254)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8, 8층	서울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
서울동부지사	02-2086-8024	(05836)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35, 4층	서울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
강원지역본부	033-815-1057 033-815-1090	(24436)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	강원도(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 경기도(가평군)
강원동부지사	033-820-2571	(25512)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3층	강원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

□ 지원제외

○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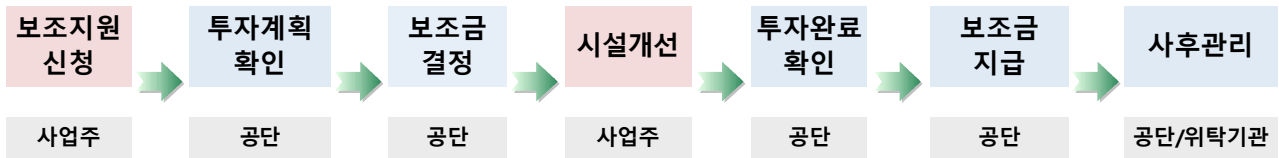
-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

【 지원제외 대상】

- 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
-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 하였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
4 지원 절차

<사업추진 절차>



□ 제출서류

신청서 제출
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(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
②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④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
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(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)
⑥ 사업자 등록증
⑦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
⑧ 상품설명서(카달로그 등) 또는 외관도면 등[설치항목, 사양서 및 도면(가격근거서류 포함)]
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⑩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

주) 사업주가 원할 경우 공사원가계산서(제작원가계산서)를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 가능

투자완료 확인
①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②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
③ 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
③ 구매.설치 계약서 사본
④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
⑤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
⑥ 지급보증보험 증권
⑦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⑧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

주) 자금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은 경우 ④ 생략

별첨1

공사(제작)품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

1. 공사(제작) 원가(검토)보고서를 제출한 경우(보조금 지급요청 시)

-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(도면, 세부내역서 포함)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결정받고, 보조금 지급(투자완료확인)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*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보조금** 확정

* 원가계산용역기관[행정안전부 예규 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)에 따른 원가검토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(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)를 충족하는 업체: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]

** 견적서, 원가계산(검토)보고서 중 최저금액과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보조지급 기준가격(공단 판단금액)으로 산정(단, 최초 보조금 결정금액 초과 불가)

- 원가계산전문기관을 통한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(부가세 제외) 중 일부를 소요금액으로 인정[단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]

※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 등의 실 소요금액이 인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인정

■ 공사(제작) 소요금액별 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

공사금액 (소요금액)	4천만원 미만	4천~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
원가(검토)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(공단)	40만원	50만원	60만원

※ 예시)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공사금액 3,000만원인 경우
(총 소요금액) 3,000만원(공사금액) + 40만원(보고서 작성비용 최대 인정금액) = 3,040만원
(보조확정금액) 3,040만원(공단판단금액)×70%(보조비율) = 2,128만원

2. 공사(제작) 원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(보조금 신청 시)

-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, 2021.12.1.)에 따라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 적용

- 제출한 공사(제작)원가 계산서 금액의 80%*를 보조지급 기준가격(공단 판단금액)으로 산정

* 공단 연구용역 및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산정한 공단 보조금 지급가격 산정기준

- 원가계산서 작성 비용 일부(부가세 제외)을 소요금액으로 인정[단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]

※ 세금계산서(증빙자료) 등의 실 소요금액이 인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금액 인정

■ 공사(제작) 소요금액별 원가계산서 작성비용 인정금액

공사금액 (소요금액)	3천만원 미만	3천~5천만원 미만	5천만원 이상
원가계산 작성비용 인정금액(공단)	50만원	70만원	100만원

※ 예시)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공사금액 2,000만원인 경우
(총 소요금액) 2,000만원(공사금액) + 50만원(원가계산 비용 최대 인정금액) = 2,050만원
(공단 판단금액) 2,050만원×80%(가격산정기준) = 1,640만원
(보조확정금액) 1,640만원(공단판단금액)×70%(보조비율) = 1,148만원